한 국 국 제 협 력 단

우 110-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02)740-5149 /전송 744-1092

문서번호 협기획 0171- 238

시행일자 1993. 8. 9.()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3. 8. 9 :	결재·공람	부장
	번호	338		차장
처리과		이기기		1과장
담당자				총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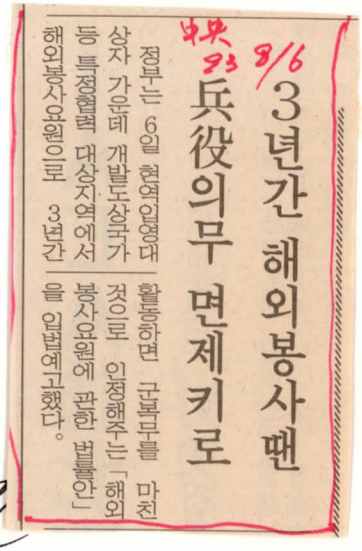
제목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제정 의견조회

연: 협기획 0171-150('93.5.26.)

1. 외무부에서는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국병역자원중 일부를 특정협력대상지역에 해외봉사요원으로 선발.파견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칭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여 동건 관련 관계기관회의 개최('93.8.12.예정) 계획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2. 이에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 협력단 입장을 정립하여 회의에 적의 대처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93.8.10.까지 기획부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중앙 93 8/6

3년간 해외봉사땐 兵役의무 면제키로

정부는 6일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 개발도상국가 등 특정협력 대상지역에서 해외봉사요원으로 3년간 활동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무 기 획 이 사

수신처: 각이사, 실·국·처장

242

외 무 부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전화 (02)720-4537 / 전송 720-2686

문서번호 경이 26343- 526

시행일자 1993. 8. 2.(5 년)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93. 8. 2	결재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제목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연 : 경이 26343 - 377, 428

1. 우리부는 대개도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의사 파견사업(1968년 이래 103명 파견) 및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1990년 이래 파견, 현재 87명 활동중) 실시를 통한 제3세계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2. 상기 국제협력 사업은 그간 개도국 국민에게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심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위상 제고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수행 요구 및 개도국으로 부터의 협력 요청 증대로 사업의 확대 실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파견 지원자의 감소 및 해외 파견 의사의 부족으로 인한 국제협력 요원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계속.....

4. 우리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확대 및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별첨과 같이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바, 동 법률안에 대한 귀부(원,처,청,단)의 입장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 법안 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부 국제경제국장 주재로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코자 하오니, 별첨 법안에 대한 귀부(원,처,청,단)의 입장을 마련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시 및 장소 : 1993. 8. 12 (목) 15:00, 외무부 810호실

o 의 제 :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o 참 석 범 위 : 국장, 심의관 또는 과장

첨 부 : 1.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 1부.

2. 참고 자료 1부. 끝.

외 무 부 장 관

국제경제국장	전결

수신처 : 경제기획원장관,국방부장관(인사국),보건사회부장관(의정국),총무처장관, 병무청장(징모국),한국국제협력단총재(총무기획이사).

240

해외봉사요원에관한법(안)

1993. 7.

외 무 부

0302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중 일부를 개발도상국가등 특정협력대상지역에 해외봉사요원으로 선발.파견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해외본사요원은 해외봉사의사 또는 일반봉사요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협정에 의거,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할 것을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명령받은 자를 말함> (제2조)

- 해외봉사요원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함. (제3조)

- 해외봉사요원은 원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임용함. (제4조)

- 외무부장관은 선발.임용된 해외봉사요원을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한 후 근무할 국가 또는 지역 및 기관을 지정함. (제5조)

-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해외봉사요원에 대하여는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함. (제7조)

- 해외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간(국제협력의사는 의료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 외에 3년간)으로 하되, 반드시 2년이상을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 (제9조)

- 해외봉사요원이 복무기간중 국위손상, 근무국가등 이탈, 복무상 의무위반 및 당해 정부등의 기피인물로 지목된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o 해외봉사요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보수등을 지급함. (제12조)

o 보사부장관은 의무불이행 해외봉사의사를 외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5년이내의 기간동안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제13조)

o 특정협력대상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은 해외봉사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를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제14조)

o 외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함.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나. 예산조치 : 해외봉사요원 파견에 필요한 소요예산(추정예산내역 별첨)을 각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필요

다. 합 의

라. 기 타

해외봉사요원에관한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협력대상지역에 해외봉사요원을 파견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봉사요원"이라 함은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와 지역을 말한다.
3. "해외봉사업무"라 함은 제2호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특정협력대상지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 또는 그 협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특정협력대상지역 기관의 약정 또는 합의에 의거하여 행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의 지원업무를 말한다.
4. "해외봉사의사"라 함은 제1호의 해외봉사요원중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분야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5. "일반봉사요원"이라 함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해외봉사요원중 제4호의 국제협력의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해외봉사요원의 신분) 해외봉사요원은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해외봉사요원의 선발.임용) ①해외봉사요원은 병역의무대상자로서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임용한다.

②해외봉사요원의 선발.임용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종사명령등) ①외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임용된 해외봉사요원을 지체없이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국가 또는 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제1항의 종사명령과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근무지역등의 변경) 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봉사요원의 근무국가 또는 지역 및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해외봉사요원의 병역)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해외봉사요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외무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해외봉사요원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이탈 금지) ①해외봉사요원은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국가 또는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근무국가 또는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외봉사요원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해외봉사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국가 또는 지역의 이탈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복무) ①해외봉사요원은 3년간(해이봉사의사는 병역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 기간외에 3년간) 해외봉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해외봉사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중 2년이상은 특정협력 대상지역에서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해외봉사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환) 외무부장관은 해외봉사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특정협력대상지역 정부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해외봉사요원을 소환할 수 있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종사기간중 근무국가 또는 지역을 이탈하거나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봉사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4.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당해 특정협력대상지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6.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무불이행 통보) 외무부장관은 해외봉사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무종사기간중 근무국가 또는 지역을 이탈하거나 해외봉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제12조(보수등) ①해외봉사요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격정지)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당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무감독)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해외봉사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를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해외봉사요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Ⅰ. 현행 의료단 및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 개요

1. 의료단 파견 사업

가. 사업 내용

o 의사가 절대부족하고 의료수준이 낙후하여 풍토병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최빈개도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의사를 파견하여 의료지원 제공

- 1968.9 니제,감비아등과 체결한 의료협력협정 등을 근거로 파견 시작

나. 선 발

o 자 격 : 의사면허를 가진자

o 추 천 : 외무장관을 거쳐 보사부장관의 추천을 받음

o 선 발 : 적격자 선발후 파견 정부 동의를 얻어 파견

o 계약기간 : 2년(추후 2년씩 연장 가능)

o 파견분야 : 내과의, 외과의등 전문의와 일반의

다. 복 무

o 감독 및 보고

- 의료단원은 협력단총재 또는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의료단원은 매분기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근무실태 조사

- 재외공관장은 매년 2회, 의료단원 근무 실태조사서를 작성.제출

라. 의료단 지원 : 급여 및 해외근무수당 포함 월평균 미화 3,500불 내외

마. 파견현황

o 실 적 : 92년 12말 현재 14명 파견중

o 93년 계획 : 15개국 18명 파견(신규 4명)

o 예 산('93) : 10억원

2.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

가. 사업내용

o 개발도상국에 우리 청년봉사단을 파견하여 기술전수, 교육, 지역사회 개발등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의 사회.경제.문화발전에 기여

- 1990년 인도네시아에 최초 7명 파견

나. 선발 및 파견

o 분 야 : 파견 대상국 요청에 따라 전문 분야별 인력 선발

- 교육, 농업, 기술, 사회봉사, 지역사회개발등

o 자 격

- 만 20 -35세의 미혼 남녀
- 파견 분야별로 일정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자

o 선발 방법 : 공개 선발

o 기 간 : 2년(1년 연장 가능)

o 훈 련 : 국내훈련(3개월) 및 현지훈련(1개월)

다. 활동단원 지원

o 현지 생활비 : 월평균 미화 300-400불 내외

o 국내 적립금 : 월 25만원 적립, 활동 종료후 국내 정착 지원

라. 파견 현황

o 실 적 : 92.12말 현재 87명 활동중

o 93년 계획 : 9개국에 57명 파견 예정

o 예 산('93) : 11.6억원

0310

Ⅱ. 해외봉사요원 파견 계획

1. 선발

 ㅇ 병역대상 자원중에서 선발

2. 파견 대상지역

 ㅇ 한국국제협력단범에서 정한 특정협력대상지역

3. 복무기간

 ㅇ 의사 : 37개월(장교및 공중보건의와 균형)

 ㅇ 봉사단 : 26개월(일반사병과 균형)

4. 보수 및 휴가

 가. 의사

 ㅇ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에 준하여 지급

 - 1인당 월보수 약 1,500 미불

 ㅇ 해외근무기간 동안 해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ㅇ 휴가는 파견지역 근무기관의 휴가관행에 따라 현지휴가 실시

 나. 봉사단

 ㅇ 현지 생활비 월평균 미화 300-400불 내외 지급

 ㅇ 의료보험등 지원

 ㅇ 현지휴가 실시

5. 파견 인원

 ㅇ 예산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예정

(단위 : 국가수/인원명)

	'94	'95	'96	'97	'98
의 료 단	5/10	10/50	15/100	20/150	30/200
봉 사 단	3/15	6/50	15/150	27/320	40/500

0311

6. 예산 계획

o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의 료 단	168	842	1,684	2,596	3,618
봉 사 단	151	505	1,515	3,232	5,050
계	319	1,347	3,199	5,828	8,668

o 예산 조달

-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와 민간 출연을 확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 예정

0312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우 110-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02)740-5208 /전송 744-1092

문서번호 협이일 1119 - 195

시행일자 93. 8. 10 ()

수신 기획부장

참조

취급		이 사
보존		
부 장	전결	
차 장		협
과 장		
기안	윤종율	조

제목 해외 봉사 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통보

1. 관련 : 협기획 0171 - 238 ()

2. 이주부는 해외 봉사 요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끝.